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216호(號) 1916(大正 5)년 8월 21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95호(號)

1913(大正 2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423호(號) 중(中) 1916(大正 5)년 9월 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한다.

1916(大正 5)년 8월 21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백작(伯爵) 데라우치 마사타케(寺內正毅)

·제6조(條)의 시행규칙(1)에 아래[左]의 1호(號)를 부가(附加)한다.

보통편(普通便) 운송장(運送狀)에는 취급(取扱) 구별(區別)을 표시(表示)하는 「소량화물취급(少量貨物取扱)」 또는 「화차취급(貨車取扱)」이라는 일본·러시아[日露] 양국어(兩國語)의 인장(印章)을 날인(捺印)해야 한다.

·제7조의 시행규칙(施行規則) 비고(備考) 7.가 제2호(號) 중(中) 「계산(計算)한다」를 「계산한다. 하역(荷役)하는 역(驛)에서 도착역[著驛]으로 운송(運送)할 경우에는 소량화물취급의 임률(賃率)에 의하여 운임 및 부대요금(附帶料金)을 징수한다」로 고친다.

·제12조㈑를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한다.

운송(運送)을 인수(引受)한 철도(鐵道) 또는 선박(船舶)은 화물(貨物)이 부패(腐敗)하기 쉽거나 또는 그 가격(價格)이 낮아서 운임(運賃) 및 부대요금(附帶料金)을 담보(擔保)하는데 족(足)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(認定)하였을 때는 운임 및 부대요금에 상당(相當)하는 금액(金額)을 발송철도(發送鐵道) 또는 발송선박(發送船舶)에게 공탁(供託)토록 하거나 또는 운임 및 부대요금의 선불(先拂)을 청구(請求)할 수 있다.

·제12조 비고(備考)의 3.을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한다.

총總 징수금(상환대금[相換代金]을 포함한다)은 이것을 취급(取扱)하는 철도 또는 선박에 통용(通用)하는 화폐(貨幣)로 이것을 징수(徵收)한다. 이 경우에서 일본·러시아[日露] 화폐의 환산(換算)은 제13조(條) 비고(備考) 1.에 의하여 공고(公告)하는 상환대금의 환산율(換算率)에 의한다.

·제14조의 시행규칙⑴2.가에 아래[左]의 단서(但書)를 부가(附加)한다.

단, 신력(新曆)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기간(期間)에서는 5일로 한다.

·제15조 비고(備考) 2.의 다음에 아래[左]의 1항(項)을 부가(附加)하고 이하 순차적(順次的)으로 내린다.

3. 하송인(荷送人)은 지시(指示)에 의거하여 아래[左]의 각(各) 역(驛)·항(港)에 한(限)하여 화물(貨物)을 정지(停止)시키고 도착[著] 역(驛)·항(港)을 변경하거나 또는 당해(當該) 역·항에서만 화물을 반송(返送)시킬 수 있다.

가. 철도원(鐵道院) 및 조선철도(朝鮮鐵道)의 역(驛) 또는 쓰루가항(敦賀港) 출발[發]의 화물(貨物)은 동청철도(東淸鐵道), 우수리철도(烏蘇里[Ussuri]鐵道), 러시아의 용함대기선(露國御用艦隊汽船) 또는 오사카상선주식회사(大阪商船株式會社)의 연락운수(聯絡運輸)를 취급(取扱)하는 역(驛)·항(港)에서, 또 당해(當該) 화물에 대하여 출발[發] 역·항과 동(同) 역·항 간(間)에 연락운임(聯絡運賃)을 설정하고 있는 역·항

나. 동청철도(東淸鐵道), 우수리철도(烏蘇里[Ussuri]鐵道)의 역(驛) 또는 블라디보스토

크항(浦鹽斯德·Vladivostok港) 출발[發]의 화물은 조선철도(朝鮮鐵道), 철도원(鐵道院), 오사카상선주식회사(大阪商船株式會社) 또는 러시아의용함대(露國御用艦隊)의 연락운수(聯絡運輸)를 취급(取扱)하는 역·항에서, 또 당해(當該) 화물에 대하여 출발[發] 역·항과 동(同) 역·항 간(間)에 연락운임(連絡運賃)을 설정하고 있는 역·항

·제3조의 시행규칙(施行規則) ⑵ 2.가, 제6조(1)의 제3항(項) 2, 제6조의 시행규칙 비고(備考) 5., 제7조⑷, 제7조의 시행규칙 비고(備考) 4. 및 7.가, 제12조 ⑴ 및 ⑶, 제12조 비고 2., 제15조⑴, 제15조 비고 4., 제18조 ⑵ 및 ⑶, 제18조 비고 2. 및 4., 제44조 ⑶ 중(中)「운임(運賃)」의 아래에 「및 부대요금(附帶料金)」을 부가(附加)한다.

·제2편(編) 연락역(聯絡驛) 중(中)「신의주新義州」 다음에 「목포(木浦)」를 부가(附加)한다.